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1년 1월 28일

국 무 총 리 김 향 식

국 무 위 원  
지식경제부 최 중 경  
장 관

●대통령령 제22650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32조제6항에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 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0398호, 2010. 11. 24. 공포·시행)되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직영점형 체인사업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과 유사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1년 1월 28일

국 무 총 리 김 향 식

국 무 위 원  
지식경제부 최 중 경  
장 관

●대통령령 제22651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작성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거·과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명령을 받은 제품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수거등을 한 제품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제1항의 사고 발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4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는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없다.

1.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4.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7.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안전성조사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모델명, 제품 사진, 인증번호
2. 조사 수량
3. 제조 연월일 또는 수입 연월일
4. 제조 국가
5.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6.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제품을 인증한 안전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조(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수거등의 권고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권고의 수락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권고의 수락 여부
3.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4. 수거등의 시기·방법 등 조치계획
5.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7조(공표의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권고의 사유 및 내용
4. 권고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거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고사항
2.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3.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4.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거등의 명령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수거등 명령의 사유 및 내용
4.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수거등의 시기 및 방법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제10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 가. 사망
  -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화재를 일으킨 제품결함(제품 외부로 불꽃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품결함은 제외한다)

제11조(보고사항)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등의 권고·명령 해제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제 신청을 한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종류·등급 및 호칭

2. 해당 제품의 품목번호 및 제조 연월일(제조 연월일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연월일을 말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해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 수거등의 계획이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고(이하 “제품사고”라 한다)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에 관한 자료

2. 제조·유통한 제품의 수량 및 판매 등에 관한 자료

3.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16조(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시설·제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2. 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제품공정, 제품 또는 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제품사고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이하 “제품사고조사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법인이나 단체일 것
3. 제품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조사활동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조사센터에 대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18조(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제품안전 관련정보”라 한다)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품안전정보망과의 연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안전 관련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 소비자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3.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4.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홍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21조(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 연구개발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법 제19조제1항에서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정보 수집을 위한 시장감시 및 제품안전관리 지도
2. 제품의 위해·위험 사례 조사
3.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불법·불량제품 조사수행자의 증표)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24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지식경제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법 제24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공표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
5.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조치 및 비용 징수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의 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
10. 법 제17조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1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
13.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6장 별칙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제6조제2항에 따른 권고의 수락 여부 통지기한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 제출기한은 2016년 2월 5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완화·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호	200만원
2.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2호	400만원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3호	200만원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	2000만원
5.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4호	100만원





[별지 제2호서식]

## 수거등의 권고·명령 해제신청서

사업자	법인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	
			전자메일	
제품명				
권고/명령 접수날짜				
권고/명령 내용				
해제 신청 사유				

「제품안전기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명령에 대한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사업자	법인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직급)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전자메일	
제품명			상표	
			모델명 (종류, 등급, 호칭)	
제조기간 (수입기간)			제조수량 (수입수량)	
판매기간			판매수량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성

수거등의 조치방법과 기간

소비자, 판매자 등에게 수거등의 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

사업자	법인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직급)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전자메일	
제품명			상표	
			모델명	
제조기간 (수입기간)			제조수량 (수입수량)	
판매기간			판매수량	

수거등의 내용 및 실적

수거등을 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 방지 대책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품의 자진 수거등에 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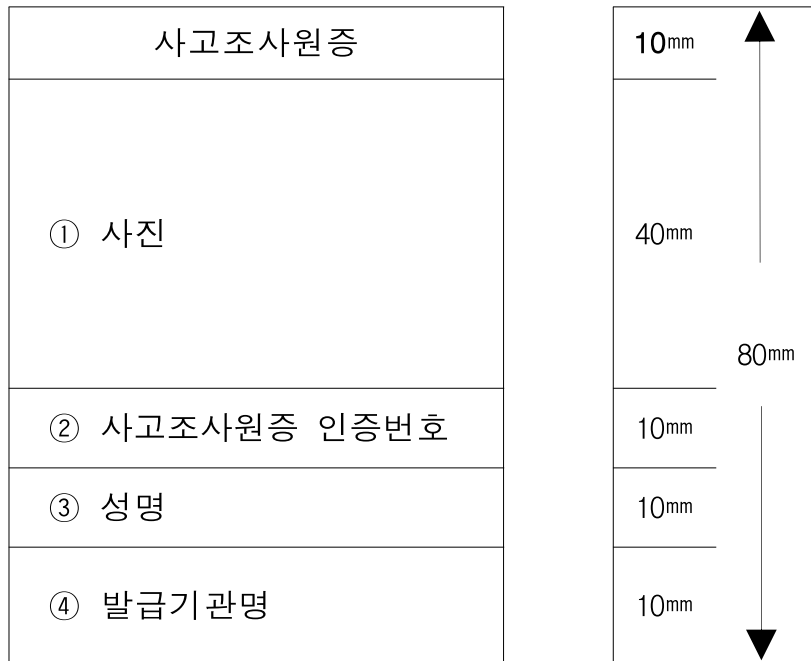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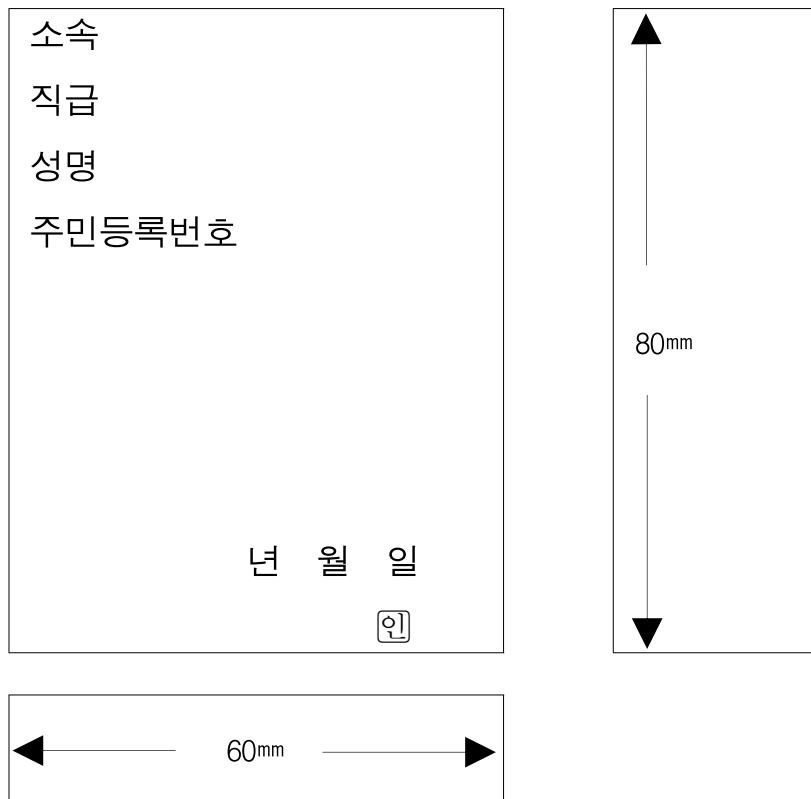
[별지 제5호서식]

제품사고 조사원증

(앞면)



(뒷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제 호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

- 명 칭:
- 소재지:
- 법인·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한자: )
- 지정 분야: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 관 직인

(뒷면)

[변경사항 기록란]

연월일	변경사항	작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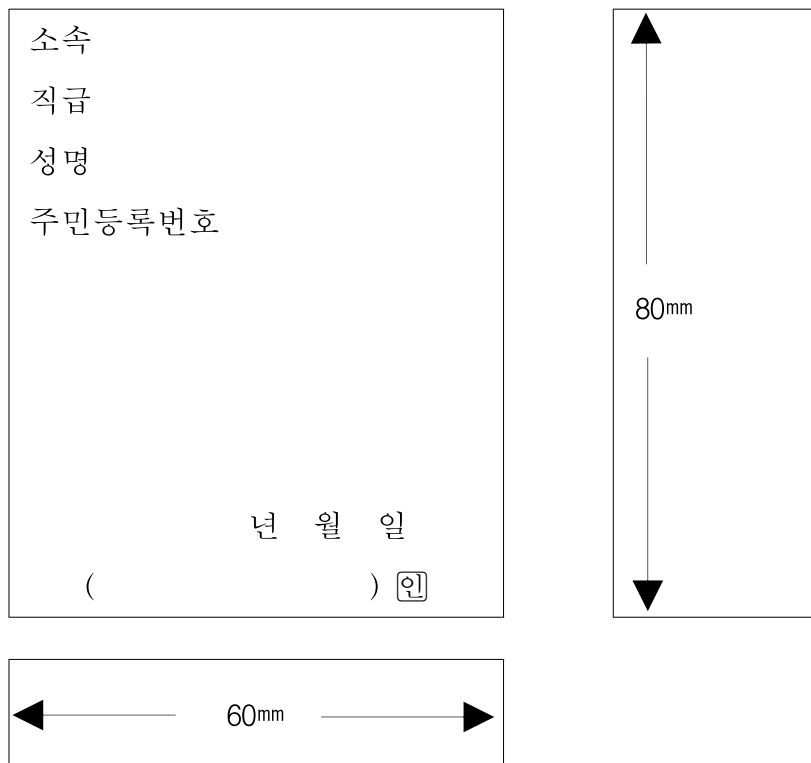
[별지 제7호서식]

불법·불량제품 조사원증

(앞면)



(뒷면)





◇제정이유

제품안전에 대한 통일된 정책방향 수립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정부가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 사업자에게 수거 등을 권고 하거나 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028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2조)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나. 안전성조사의 절차(안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한국제품안전협회 등에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고,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제품을 인증한 안전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 다. 제품의 수거 등의 권고(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 수거 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권고의 사유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제품 수거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의 수락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 라. 중대한 결함의 범위(안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 등을 명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사망 또는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을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 및 화재를 야기한 결함으로 정함.
- 마. 제품의 직접 수거 등의 조치(안 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을 직접 수거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제품 수거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바.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안 제17조)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요건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일 것,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법인이나 단체일 것, 제품의 사고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조사활동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월 28일

국무총리 김항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장 최중경

●대통령령 제22652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